



사람중심의 행복한 성동

문서번호	주민생활과-1212
결재일자	2015. 1. 20.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29호

주무관	통합관리팀장	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국장	부구청장	
주은영	노용식	최성연	박기웅	01/20 이비오	
협 조					
	생활보장팀장	신성희			

- 2015년도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성 동 구

(주민생활과)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 계획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조사 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함

## I 조사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 II 조사 방향

- 복지대상자에 대해 정기적인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방지
- 복지급여대상자 관리의 공정성, 정확성 및 급여지원의 적정성 확보
- 사실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지급의 신뢰성 확보

## III 조사 개요

1. 조사기간: 2015. 1. 1. ~ 2015. 12. 31.
2. 조사대상: 수급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

(2015. 1. 1 기준)

총수급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3,650	5,517	3,090	4,292	560	1,225

### 3. 조사수행 주체

- 통합관리팀 동별 담당
-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통반장, 사회복지관 등의 사회복지사 지원을 적극 활용

## 4. 조사내용(법 제22조제1항)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 ·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 취업상태 ·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 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 5. 조사방법

### 가. 행복e음에 의한 조사

-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행복e음(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주기적으로 제공된 자료에 의해 확인조사 실시
- 소득 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구분	조사 항목	공 적 자 료	공 적 자 료 변 경 시 기	정 보 시 스템 통 보 내 용	정 보 시 스템 통 보 시 기(주 기)*	
소득	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일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7월	전월 표준보수월액	매일	
		장애인고용공단(사업주의 고용장 려금 신고자료)	분기	고용장려금:전월 근로소득	매분기 초	
		장애인고용공단(사업주의 고용부 담금 신고자료)	년	고용부담금:전월 근로소득	연 1회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10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	연 1회	
	일용근로소득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분기	입수가능한 가장 최근 6개월 자료	매분기 초	
	사업소득	농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1회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직불금	O고정 : 10월 O변동 : 3월	직불금(고정+변동)/12	연 1회
		어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1회
		임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1회
		기타사업소득 (자영업자)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1회
			사업자등록증	수시	신규사업자등록자료	반기
	재산소득	임대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1회
		이자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이자소득/12	연 1회
		연금(개인)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연1회	연금의 월 수령액	연 2회

구분	조사 항목	공 적 자 료	공 적 자 료 변 경 시 기	정 보 시 스템 통 보 내 용	정 보시 스템 통 보시 기(주 기)*
기 타 소 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4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사학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공무원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국방부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별정우체국연금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실업급여	매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산재급여	매월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	전월 지급된 보훈급여	매월
재 산	토지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 10월 ○취득세 : 수시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연 1회 (취득세:매월)
		국토부 지적대장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된 토지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반기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 10월 ○취득세 : 수시	○재산세 :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연 1회 (취득세:매월)
		국토부 건축물대장 (시설물제외)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된 건축물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반기
	선박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 10월 ○취득세 : 수시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연 1회 (취득세:매월)
	항공기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재산세 : 10월 ○취득세 : 수시	○재산세: 시가표준액 ○취득세: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어업권	지방세정(취득세)	취득세 :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입목재산	지방세정(취득세)	취득세 :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회원권	지방세정(취득세)	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금융재산	금융정보 조회결과	수시	금융재산별 가액 ※ 요구불 예금: 3개월 평균잔액	수시
자동차	국토부 차적정보	수시	전월에 취득한 차량정보 -(1순위)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포함 -(2순위)지방세정자료 등	수시 (차량가액은 매분기초)	

\* 각 항목별 통보 주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자료에 대해서만 통보

## 나. 금융재산 조사

- 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등 조회 결과 적용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금융정보등의 범위 및 서식 등(붙임1) 참조

## 다. 실태조사

- 행복e음(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자료가 미흡하거나 불확실한 경우 및 공적자료로 파악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통해 사실 확인 자료 첨부

# IV 조사실적(2014년)

### □ 국민기초수급자 확인조사: 10,929세대 18,539명

총계		기초수급자 보장결정						기초수급자 급여변경					
		가구원추가 (신규)		보장변경		보장중지		급여 증가		급여 감소		입원공제비 변동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10,929	18,539	50	52	681	1,395	414	607	2,862	5,399	5,988	9,857	934	1,229

### □ 국민기초수급자 근로능력판정: 806명

(단위: 명)

근로능력 판정대상	진단서 제출자		진단서 미제출자			
	근로능력 없음	근로능력 있음	장애,희귀난치 성질환자 등	조건부과	소득신고	기타(전출, 사망, 중지등)
806	586	101	12	68	32	7

### □ 부정수급자 관리: 437세대

(단위: 세대)

계	부정수급자		부양의무자 부양의무 불이행	
	보장비용 징수	보장비용 징수제외	보장비용 징수	보장비용 징수제외 (가족관계단절사유)
437	18	35	0	384

## V

# 세부 조사계획

## 1. 조사대상자별(조사내용별) 조사 시기

### 가. 소득조사 (2월, 8월)

- 연 1회: 지출실태표 조사에 의한 소득 확인대상자, 추정소득부과자, 사적이전소득 부과자
- 분기별 1회: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불이행자 등 근로 능력이 있으나 현재 소득 활동을 하고 있지 아니한 자
- 기간경과자: 조건부과 제외대상자 중 환경적응 기간이 있는 자
  -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별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나. 재산조사 (5월)

- 매년 1회 조사  
(단, 수급자 재산범위 특례가구의 재산에 대해서는 반기별 1회 이상 조사)
- 재산 종류 및 범위 : 일반재산, 금융재산, 승용차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액: 5,400만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1.04%, 일반재산4.17%, 금융재산6.26%, 승용차 100%

### 다. 부양의무자 조사 (2월~4월)

- 매년 1회 조사
-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판정
  - ※ 단, 주기적인 확인조사 이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 실시
-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2. 조사절차

- 2015. 1. 1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동별 (수급자 개인별 조사주기) 계획 수립 - 2월중
- 조사일정에 따라 조사대상자별 명부 작성 및 조사안내문 발송
- 행복e음(사회보장 정보시스템) 회신자료 확인: 수시
-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구비 서류 제출 요구

### 3. 조사결과 조치

- 수급(권)자의 자격,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 등을 변경
- 부정수급(권)자 등에 대해서는 보장비용 징수 등의 행정절차 수행
-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5인 이상 함께 거주하는 것을 발견시, 지자체 시설담당 공무원에게 통보 - 보장시설 안내 및 입소 유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일제조사 결과 보고 : 2월 말, 8월 말

### 4. 수급권자 누락방지를 위한 홍보

- 동 복지담당 방문상담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 통반장, 마중물협의회 위원을 활용한 저소득 가구 발굴
- 확인조사 및 국민기초수급자 지원등의 사항 성동소식지 등 게재 - 4월중

## VI 행정사항

- 조사결과에 따른 소득재산 변동사항 적용 - 주민생활과 통합관리팀
-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 행정절차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 조사대상자 서류징구 및 수합 - 주민생활과, 동주민센터
- 제출 서류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 동주민센터

붙임 금융정보등의 서식 및 구체적인 범위 각1부.

#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1. 복지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 - □□ □□□□□□ □□□□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 <sup>1)</sup>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sup>2)</sup> (서명 또는 인)
		□□□□□□ - □□ □□□□□□ □□□□		
		□□□□□□ - □□ □□□□□□ □□□□		
		□□□□□□ - □□ □□□□□□ □□□□		
		□□□□□□ - □□ □□□□□□ □□□□		

- 1)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 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 「금융정보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장애인연금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 동의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



###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 1)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일임업자
  -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6)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 8)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 10)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1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 2) 정기에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불입액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 1)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2)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유의 사항

-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제4항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5제4항, 「유아교육법」 제26조의4제4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 및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4, 「유아교육법」 제26조의2 및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라 최초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제3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장애인연금법」 제11조에 따른 확인 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영유아 보육법」 제34조의 6제5항, 「유아교육법」 제26조의3제5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5 조제6항에 따라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획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의2에 따라 벌칙규정을 적용합니다.